#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28 발 의 년 월 일:2023년 01월 12일 발 의 자:박성연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춘곤,

김원숭, 김원태, 김준곤, 김태수, 문성호, 박영한, 박칠성, 송재혁,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경숙, 이민석, 이은림, 이종태,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홍국표, 황철규 의원(23 명)

### 1. 제안이유

본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특별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소와 사업장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장 요건만으로 완화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와 그 적용대상을 일치시킴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권리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개정함( 안 제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 · 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 기계생물」제5조"를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 치세법」 제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	제3조(적용범위)
별시(이하 "시" 한다)에 <u>주소와 사</u>	<u>사업장을</u>
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	,
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	
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	i
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 미첨부사유서(2호)

요 청 인 : 박성연 의원 담 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류동균 예산분석관

접 수 일: 2022.12.23.

회 신 일: 2022.12.26.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 1. 비용발생 요인
- 2. 미첨부 근거 규정
- 3. 미첨부 사유
- 4. 작성자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서울 특별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와 사업 장 요건만으로 개정・완화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권리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제8 조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 등 지원 관련 규정과 결합되어 예산 지출이 늘어날 가능 성이 있으나, 합리적 예산의 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움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 3. 미첨부 사유

-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제1항 제2호)
  - 안 제3조는 본 지원조례적용범위를 기존의 '서울특별시에 주소와 시업장을 둔 소상공인'에서 서울시에 시업장 주소없이 서울시에서 시업장을 갖추고 시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포함시킴으로서, 제6조 시장의 소상공인 지원계획 시행의무, 제7조 실태조사 범위의 확대, 제8조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등과 결합되어 향후 예산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물론 서울시 집행기관에서도 주사업장과 주소 가 일치하지 않는 소상공인(마케팅 등의 이유로 경기도 인근에 주소지를 두면서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영세소상공인 사례가 적지 않음. 또한 반대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은 경기도, 인천 등에 두는 사례도 있으나, 관련 문헌에는 전자가 많다고 보고 있음)에 대한 공식통계는 물론 이러한 소상공인 전체 모집단도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존예산에서 집행기관의 지원 범위 확대의지와 정치적 협상력에따라 예산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객관적 비용추계는 어려움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과장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팀장 분석관(주무관) 류동균 주무관

**2** 02-2180-7952

e-mail: rooster72@seoul.go.kr